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

기 관 명 ○○○○시

징 계 대 상 자 ○○○○시 ○○○○과 지방○○○○○ ○○○  
(전 ○○○○과)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시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보 ○○○은 2015. 7. 10.부터 2017. 1. 12.까지, 지방○○○○  
○ ○○○은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에서 “○○○○○ 통합관  
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시(○○○○과)에서는 관광정보화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 통합관광안내시스  
템 구축 사업을 (주)○○○○컨소시엄(○○○○ 241,247천원, ○○○ 147,702천원,  
○○○○○ 103,391천원)과 2015. 8. 17. 계약(사업비 : 492,342천원)을 체결하여  
2016. 3. 14. 최종 구축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  
○○○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내용

| 구 분       | 주 요 사 업 내 용                                                                                           | 비고 |
|-----------|-------------------------------------------------------------------------------------------------------|----|
| 통합 관광 시스템 | ○ 웹사이트 구축(영문, 국문)<br>○ 관리시스템 구축(CMS)                                                                  |    |
| 애플리케이션 개발 | ○ 모바일 AP 개발(국문, 영문)<br>○ 애플리케이션 2식 개발(애플, 안드로이드)                                                      |    |
| 관광 전자지도   | ○ 지도 기반 등산로, 둘레길 Open API 기반 지도 개발<br>○ 전지도 연계한 항공뷰 및 지상뷰 서비스 구축                                      |    |
| 관광 콘텐츠 구축 | ○ GIS기반 ○○○○○○ 관광DB 구축(숙박, 음식점 등)<br>○ Beacon, QR코드를 활용한 관광안내 서비스<br>○ ○○ ○○○ 홍보 동영상 제작, 스토리텔링 오디오 제작 |    |

※ ○○○○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에서는 ○○○○○ 통합관광안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017. 3. 15.과 2017. 12. 28. 각각 ○○○○○(주)와 계약(사업비 : 2017년 22,209천 원, 2018년 33,283천 원)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다.

## 1. 과업 일부 미이행 상태로 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통합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1식, iOS 1식 각각 개발하여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의 앱 스토어에 등록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2년간 등록 유지하여야 하며, 각각의 앱 스토어 등록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업체인 (주)○○○○컨소시엄에서 등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세 과업요구서는 [붙임]과 같다.

따라서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은 “○○○○○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적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3. 15. ○○○○○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자 (주)○○○○컨소시엄은 준공 검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3. 15.부터 2016. 3. 24.까지의 기간동안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과업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여 검사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감리업체인 (주)○○○○○○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만으로 검사한 결과 일부 과업<sup>1)</sup>이 완료되지 않았음에

---

1) ① 아이폰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앱 스토어를 이용하여 배포, ② 별도 ○○○○○ 영문 앱 개발, ③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평가와 댓글 기능을 통한 정보공유 서비스를 구현, ④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 기반의 서비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

도 검수조서(2016. 3. 25. 작성)에 과업요구서인 [붙임]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000(○○○○○ 앱 개발), ○○○-000(○○○○○ 영문 앱 개발)이 개발 완료되어 적합한 것으로 작성하였다.

다시 말해,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으로서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지, 지연배상금 부과 등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및 검수조서에 적어 ○○○○시 재무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에도 용역에 대한 결과가 제안서 등과 같이 전체 완료되었다고 검수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시(○○○○과)에서는 실무담당자(감독공무원)와 실무책임자(검사공무원)가 작성한 준공 및 검수조서를 토대로 구축사업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2016. 12. 29. (주)○○○○컨소시엄에 사업비 잔액 194,52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에서는 정부합동감사 기간 동안 iOS용 ○○○○○ 앱이 아직 애플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 및 ○○○○○ 앱 과업요구서 내용 중 일부가 미구현되었음을 확인하여 2018. 2. 24. ○○○○○ 앱을 애플스토어에 등록(등록비용 120천원)하였고, 2018. 3월말까지 SNS 참여 및 공유 기능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업이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검수조서 등을 적합한 것으로 작성한 실무담당자 지방○○○○보 ○○○과 실무책임자 지방○○○○○ ○○○은 부실한 사업 수행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보 ○○○은 “○○○○○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감독공무원으로 아이폰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평가와 댓글 기능을 통한 정보공유 서비스를 구현 및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 기반의 서비스와 연계 구성에 대해서도 사업관리를 태만히 하여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감독공무원 조서에 적합한 것으로 부당하게 작성하였다.

## 2. 유지관리 부적정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시 정보화사업 추진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주)○○○○컨소시엄에 하자 보수하도록 명하거나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 3. 25.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16. 3. 26.부터 2017. 3. 25.까지인 하자보수보증서를 (주)○○○○컨소시엄으로부터 제출받았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미구현<sup>2)</sup>된 기능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미구현된 기능을 현재 유지보수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게 되는 등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업체에게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위 관련자 중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시장은

**[징계]**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감독 및 검수한 위 관련자 중 지방○○○○보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2) ① 아이폰용 앱 등록 및 배포, ②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평가와 댓글 기능, ③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 연계한 정보공유 서비스 기능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